

## 수도용 자재 및 제품,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(KC) 전면 시행



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지난 1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시공업자는 미인증 제품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‘수도법’ 제14조 및 환경부령 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, 수입, 공급, 판매코자 하는 자는 ‘위생안전기준 인증(KC)’을 취득 후 제조, 수입, 공급,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‘수도법’ 제83조,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.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‘수도법’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‘위생안전기준 인증(KC)’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‘수도법’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. [편집자 주]

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(KC) 적용 제품은 지난 2011년 5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해 지난 1월 26일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. 이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코자 하는 기계설비시공업자는 미인증제품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과 인증대상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.

## 수도법

**제14조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)** ① 수도 시설(취수·저수·도수시설은 제외한다)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·공급·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·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

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, 인증의 방법·절차, 검사기관의 지정,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〈전문 개정 2010.5.25〉

## 수도법 시행령

**제24조의2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)**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〈개정 2011.10.28, 2011.11.23〉

1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
2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
3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
4. 「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
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
6. 삭제〈2011.11.23〉
7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

①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

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〈본 조 신설 2010. 11.26〉

**제83조(별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〈개정 2010.5.25〉

1.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
- 1의2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·공급하거나 판매한 자
- 1의3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
- 1의4.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

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

**제87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〈개정 2010.5.25〉

1.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2. 삭제〈2010.6.8〉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〈개정 2010.5.25, 2011.7.28, 2011.11.14〉

1.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·공급 또는 판매한 자
2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◉

##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범위

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
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	그 밖의 금속관류
	합성수지관류

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	그 밖의 금속관류
	합성수지관류
기계 및 계측·제어용 자재 및 제품	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

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	그 밖의 금속관류
	합성수지관류
기계 및 계측·제어용 자재 및 제품	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
도로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	- 콘크리트 수조,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로 -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

※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(<http://www.kctap.or.kr>)을 통해 인증제품 검색 가능.

※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 : 02-3156-7782

※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도정책과 : 044-201-7123